

의안번호	제 81호
의결년월일	1995. 12. 21.

논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(안)

심사보고서

1995. 12. 22.

총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5년 12월 9일 논산군수
- 나. 회부일자 : 1995년 12월 11일
- 다. 상정일자 : 1995년 12월 21일 제45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송희정)

가. 제안이유

-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대상자는 18세 이상 지체·시각장애인중 본인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연령제한을 철폐하고 정신지체·언어·청각장애인에게까지 세제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는 종전 18세 이상 지체 (1급 내지 3급), 시각 (1급 내지 4급) 장애자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령제한을 삭제하고 정신지체·언어·청각장애인 까지 범위를 확대코자 함에 있으며,
- 자동차 등록원부상 본인명에서 배우자·부모명의로 등록된 경우도 포함하여 감면키로 하였음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현 논산군세 감면 조례중 제4조만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다른법령 및 조례에도 저촉되지 아니하였음.

※ 우리군의 현재 자동차세 감면현황 40대

우리군의 장애자수 : 1,632명.

第45回 - 第11次

4. 질의답변 요지

- 없 음.

5. 토론요지

- 없 음.

6. 심사결과

- 재석위원 9인 전원일치 의결.